

육림 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육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력수급은 현지의 농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산림의 소유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나. 현행 산림법은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과 제4항에서 신고 없이 임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농민을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는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산에너지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도

(1) 임산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법규현황

- 산림법 제11조(사업의무 및 신고)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 동법 시행규칙 94조 제2항과 제4항에는 신고없이 임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국유림의 경우 동법 제74조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이 보호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그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

(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는 대체에너지로서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바이오 에너지 설비란 생물유기체를 변환하여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가스 및 바이오 디젤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규정.

3. 주요 연구결과

(1) 소경재로부터 얻어지는 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원지에서의 생산단계부터 1차 가공에 이르는 단계가 수요자의 조건에 맞도록 그 접근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함.

(2) 칩 및 톱밥의 경우에는 부산물이 생산되는 인근에서 곧바로 생산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이동식 장비의 활

용이 요구됨.

(3) 육림부산물의 일차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임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장비구입비 보조 및 국산장비개발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4) 무육산물 및 소경재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펄프, 연료, 기타 환경농업을 위한 원료와 소규모의 제재가 가능한 원료로 구분지어 품등화 시킬 필요가 있음.

(5) 국산 소경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단면 건축부재 및 내장용재의 개발이 필요함.

4. 기대효과

(1) 육림산물의 수집·운반방법을 현지에 적용하여 향후 산림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또한 적기, 단계별 육림작업 실행으로 우량 대경재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2) 육림산물을 집성재, 목공예, 톱밥, 칩, 숯 등의 생산에 활용하여 육림부산물 이용도 증진

(3) 물리·기계적 성질과 재색 등이 상이한 이수종간의 혼합집성 및 동일수종간 집성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집성재 수입대체 및 국산재 이용확대 가능.

(4) 국내산 소경재의 유효활용 및 다양한 형상의 환경친화적인 외장물 제작(공원벤치, 자전거 보관소, 공원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이 가능.

5. 건 의

가. 건의부처 : 산림청,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환경부, 강원도(농정산림국)

나. 건의사항

(1) 산림청, 강원도

○ 산림자원을 현지의 농민과 산림의 소유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유림의 경우 산림법 제11조의 단서조항인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동이나 리의 작목반 또는 산림계에 그 사업을 대집행하게 하고 그 부산물을 양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의 경우 동법 제 74조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이 보호하고 있는 산림’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동이나 리의 작목반 또는 산림계가 연대보호하고 그 부산물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

○ 목재 칩이나 톱밥의 경우도 광의의 바이오에너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농림부

◦ 농촌지역의 면세유 대체지원의 일환으로 목재칩이나 톱밥에 대한 지원 및 보일러 설치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요구됨.

(4) 환경부

◦ 폐자재 활용과 CO2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